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문 화 예 술 과 세 법

## Contents

칼럼	문화예술과 세법
이슈 1	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영도 거청 조선소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 2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사업자가 아니다
이슈 3	미술의 미래가치를 위한 두 가지 주문
예술+고용	부산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현장: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욕망과 아쉬움
정책보고서 갈무리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를 손에 들고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이번호 편집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어느 폐조선소의 문화 공간 전환 실패담으로 시작해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제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 키워드로 '세법'을 꼽았고,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칼럼>과 <이슈 1,2,3>에서는 회계사, 민간기업 문화전문가, 학예연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법 이야기들로 구성하였고, <예술+(더하기)>에서는 '고용'과 연결 지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보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장에서는 외부에서 바라본 부산문화재단 연구보고서로 갈무리하였습니다.

덧붙여 발간일 즈음하여 부산은 이미 벗꽃엔딩한 봄날이지만 계절의 변화로 잠시나마 화사한 기운을 모두가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 Contents

- p.03 **칼럼**  
[문화예술과 세법]  
김소영(한미법인회계 회계사)
- p.06 **이슈1**  
[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영도 거청 조선소 사례를 중심으로]  
홍순연(삼진이음 이사)
- p.10 **이슈2**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사업자가 아니다]  
배일성(서원회계법인 회계사)
- p.14 **이슈3**  
[미술의 미래가치를 위한 두 가지 주문]  
정종호(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p.17 **예술+고용**  
[부산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현장  
: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욕망과 아쉬움]  
우동준(생각과바다 매니저)
- p.19 **정책보고서 갈무리**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를 손에 들고]  
이수진(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조교수)
- p.22 **3~4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세법은 어렵다. 힘들게 공부하고 연구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들춰보면 개정되어 있다. 게다가 불친절하다.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는데, 문장이 끝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필자는 회계와 세무를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러하는데, 일반 납세의무자, 그리고 예술인에게는 오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세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진화(?)되어 왔다. 이미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사업자로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지출증명 서류나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챙기지 못하면 불인정, 반납조치라는 쓰라린 불이익을 안게 된다. 또한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던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모금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세법에는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통상 문화예술 관련 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문화예술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비 촉진 세제이다.

공급자 지원 세제의 경우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공제·감면제도는 문화예술분야 관련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예술분야 세제로

칭하기에는 다소 민망하다. 그나마 조금 더 문화예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제라면,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방문화원 등 일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특례,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취득세·재산세 면제 규정의 경우 납부할 취득세·재산세가 있어야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없는 문화예술단체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특례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은 영위하고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예술단체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게다가 당해 특례는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국립단체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문화예술서비스 소비 촉진 세제로는 문화비 소득 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기업의 미술품구입비 손금산입,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이 있다. 각 세제가 소비 촉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필자 또한 매우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하나, 사실 각 세제의 소비 촉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공개 대상 국세통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행 세제상 문화예술서비스 공급자 및 소비자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몇 가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들이 직접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제도입 전후로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들의 매출액 실제로 증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간접적인 효과를 숫자로나마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세법은 창작활동을 방해할 뿐,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불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필자 시각에서 보건대, 세법이 잘못 만들어진 탓은 아니다. 굳이 원인을 따져본다면, 우선 문화예술서비스 공급자 상당수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다보니, 감면받을 세액도 없는 경우가 많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딘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문화예술서비스 소비 촉진 제도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가 언제, 어떤 장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세제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제·개정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매년 다양한 공제·감면제도 등을 담은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모든 제도가 입법화되지는 않는다. 현장의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세제개선안들이 실제 법령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는 필자가 그간 문화예술분야 세제개선방안 연구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에 필요한, 그리고 그 효과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예술인 스스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해보려 한다.

### **첫째, 현행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없이 제·개정의 칼을 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데, 특히 요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문화예술단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지, 공급자를 위해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조세지출건의서를 제출한들 통과될 리가 없다. 조세지원 목적과 대상자가 애초에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이다.

### **둘째, 세제지원 목적이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간혹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강력한 세제지원제도를 요구하면서도,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술은 가난하니까, 영세하니까, 순수예술은 모객이 어려우니까 세제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일까? 하지만 얼마나 영세한지, 얼마나 모객이 어려운지에 대한 근거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세법을 제·개정할 수는 없다. 한편, 문화예술의 비영리성을 이유로 세제지원제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비영리분야에는 문화예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의료, 교육, 종교 등 다른 비영리분야에 우선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해야만 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공감대를 발판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 되는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보통 조세지출건 의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제안하는데, 여기에는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 분석, 향후 추이 예측,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조세지출건의서에 담게 된다. 여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의 구성성, 적시성이 높을수록 정확한 예측과 진단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분야 통계자료 중에서는 공연예술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등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조사항목의 한계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양한 가정과 전제를 덧붙여서 어떠한 수치를 뽑아 내기는 하지만, 아쉬울 때가 많다. 물론 이러한 통계조차 없었다면 문화예술분야 세제개선 작업이 더 큰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사항을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면 조사 항목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집·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

세법도 결국 법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만 뒷받침된다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단시간 내 입법화 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제·개정안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는 세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황 조사, 통계자료 축적, 선행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는 문화예술의 특성 상 법조문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규정에서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장르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장르, 예를 들어 다원예술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또, 행위예술은 연극일까, 무용일까? 혹은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창작 연극을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하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이 뿐만이 아니다. ‘창작’의 범위도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진작품은 작가가 원한다면 무제한 인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창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50에디션까지? 100에디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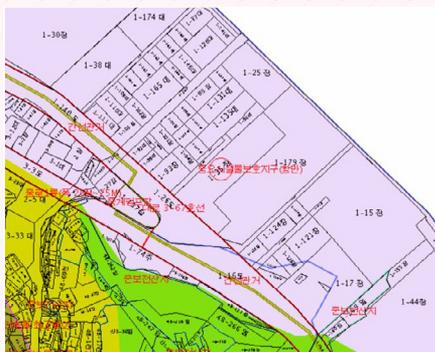
현행 법령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 예술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세청 혹은 기획재정부에서 알아서 개선해주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또한 세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예술인 그리고 예술인이 속한 단체에게 크고 작은 금전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미우나 고우나 이 불친절한 녀석을 이해하려 애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행 법령의 ‘이해’단계에서 더 나아가, ‘현명한’ 제·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도시는 우리가 만든 무수히 많은 규칙과 규범들이 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들 것들이 바로 규칙들이다. 이러한 도시 속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약속들이 도시는 성장하고 때로는 통제되기도 한다. 특히 땅과 건축물용(用) 문제는 아주 민감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많이 보았듯이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 그리고 개발의 논리로 형질을 과감하게 바꾸었더니 특혜와 이권 등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용도가 결정되고 코스트 즉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건축물에는 다양한 용도를 결정하는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멋있게, 아니면유용하게 사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땅에 성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상상력이 물거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들어 영도 거청조선소가 이슈가 된 기사를 보았다. 조선 산업의 쇠퇴에 따라 폐공간이 되었지만 문화인들에게는 장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소의 기능을 해왔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임대계약을 통한 운영권이 너머 간 상태이다. 더욱이 문화적 관점에서 아쉬움은 부산국제사진제, 영화영상부산 로케이션 장소로 주목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예술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딱딱하지만 냉정하게 정해진 용도의 건축물과 공업지역이라는 땅의 성질이 충돌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건축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 도시적 검토를 수반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럼 그간에는 가능했던 이유는 지속성이 아닌 이벤트로서 공간을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거청조선소 용도지구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거청조선소의 땅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자. 거청조선소가 있는 영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전용공업지역이다. 그리고 중요시설보호지구(항만), 전용공업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따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근린생활시설(카페), 공장, 창고,

자원순환시설, 기숙사, 문화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시설장 및 박람회장으로 한정되어 지을 수 있는 땅인 것이다. 즉, 거청조선소가 있는 땅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식 이든 간에 임시적인 방법으로 문화적 활용만 가능한 운명의 땅이기도 하다. 그럼 혹자들은 땅의 성질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말을 한다. 종상향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주변 전체를 바꾸는 일이니 도시계획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적 준비도 문화적이라는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측면으로 필요성을 어필해야만 가능하다. 완전하게 공업지역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적 처방이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말 몇 단계를 뛰어넘어 문화시설용도의 땅으로 바꾸는 일은 개인이 이익 보다는 공공성과 당위성을 무엇보다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건 바로 땅값과 특혜와 밀접하게 관계됨에 따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거청조선소만 바꾸면 안 돼? 가능한 하다. 이러한 방법을 흔히 지구단위계획적 처방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거점시설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도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 또한 사적인 공간을 공공재로 바꾸는 일이기에 주변보다는 건축주와 공공의 의지가 반영 되어야 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를 깊숙하게 고민해야한다. 정말 공공재로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sup>1)</sup>

1) 최근 (2020.11) 영도구 청학동 공업지역 내 (한국타이어부지) 공업 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새로운 형식의 복합기능도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된다.

그럼에도 암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화두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을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활용측면으로 안타까움 보다는 좀 더 냉정한 논의를 하기위한 시작으로 생각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공간, 문화재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좀 더 깊은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와 동의하는 접근방법을 찾는 것은 어떨까? 이해와 동의는 일부 문화적 활용 목적보다는 말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파생력을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것을 분석하고 파악 그리고 제안하는 판단적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거점이 공유의 목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미 주변에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와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만들어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는 참으로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지만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큰 틀에서 각 역할을 준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표면적인 거버넌스의 활동이 아닌 포지션별 그룹으로 나누어 움직이는 방향은 어떨까? 예를 들면 문화적콘텐츠, 공유자산법률, 클라우드펀딩, 행정지원 거버넌스 등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해결 솔루션그룹을 만드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지금의 아쉬움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다시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10년 전만하더라도 부산시에서 근대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당시에는 근대기 역사문화자산을 보존과 활용방법의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일제의 잔재로 보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자원들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고 학교 박물관, 카페 그리고 인터스트리얼 공간 브랜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에 남선창고는 시대적 인식이 다름에 따라 철거되었지만 지금은 살아남은 자산들은 이제 경제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대이다. 이제는 역사인식의 문제보다는 역사자산이고 활용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건축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이러한 지역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용도를 더해 토지의 이용을 유연화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다.

10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북항재개발이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땅만 메우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도시는 쇠퇴할 것이고 무수히 많은 폐 시설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지금은 딱딱한 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지만 사실 도시에 무수히 많은 규칙과 규범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 힘을 발휘하는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거버넌스 활동들이 디테일 해 진다면 분명 정책과 의지는 움직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때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세금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간다. 알고자 해도 쉽지 않다. 알수록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건 세법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토대가 되는 세금을 다루는 법률임과 동시에 그 범위가 삶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세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섭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세법을 모른다는 것이 세금 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면죄부도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최소한의 세법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적어도 모르는 것을 넘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막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세법 규정 중 흔히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면세사업자

이름에서 주는 어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확한 명칭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세금이 뭔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면세사업자에 면제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매출을 일으킬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걷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즉, 사업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가게가 있다. 쌀가게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이다. 우리는 아무도 쌀가게 사장님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다. 그렇다면 뭐가 면세란 말인가? 우리가 쌀가게에서 쌀을 살 때 우리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별도로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단지 가격표는 일반적으로 그 10%가 추가된 금액을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편의점에서 캔커피 1,000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은 상품은 실제로는 상품가격 909원, 부가가치세 91원, 소비자가 지불할 금액 합계 1,000원 이라는 내용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예를 들어 쌀 한봉지 909원인 상품은 소비자에게도 909원만 청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매하게 된다. 이 경우 캔커피 한개를 1,000원에 판매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쌀 한봉지를 909원에 판매한 쌀집 사장님은 둘 다 본인의 수입은 909원으로 동일하고 이윤이 같을 경우 각자 납부할 소득세도 동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본인 스스로가 무슨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세금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큰 낭패가 올 수 있다.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다. 문화예술 공연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에서 지불 증빙으로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심코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막대한 조세수입 재원인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오류는 가혹할 정도로 규제가 강하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했다는 영수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가격에 포함해서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세금”이 제외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일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발생한 수입금이 세법상 면세공급이 아닌 과세공급으로 판명된다면 일은 더 커지게 된다. 소위 겸영사업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 부르고, 면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부른다. 한편 두 가지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부르는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다. 실제로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상당수의 문화예술 사업자는 실제로는 겸영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창작예술 또는 영리목적이 아닌 아마추어 공연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영리목적으로 공연활동 등을 반복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문화예술 관련 매출 중 면세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그런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범위와 불일치하는 것이고 관련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 문화예술가 또는 단체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면세로 적용되는 활동은

매우 한정적이고, 과세로 적용되는 활동이 더 클 수 있으니 본인의 활동 성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과세로 적용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을 통해 겸영사업자로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혹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우리는 국가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주었으니 우리가 하는 공연활동이 면세인 것 아닌가, 나라에서 면세로 등록해주고서는 어떤 것은 과세매출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또는 겸영사업자)의 등록은 국가에서 관련된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자 스스로 사업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가깝다. 즉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라는 것은 사업자 스스로 면세대상이 되는 사업만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고 국가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까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과세사업자로 변경 등록을 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시 쌀가게로 가보면 쌀가게 사장님이 캔커피도 함께 팔고 싶으면 일반과세자(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의무를 다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편의점 캔커피는 과세로 판매되고 쌀집 캔커피는 면세로 판매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으나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영위할 수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유번호증은 단체는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또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예외적인 형태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동시에 발급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주로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전제로 마련된 제도이다 보니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에서 상당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문화예술가 또는 단체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연료를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간혹 간이과세자로 등록 해주고서는 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적인 매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고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받는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점은 감안해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할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표적인 고유번호증 단체인데 관리사무소의 자금흐름은 수입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각 입주자에게 거둬들인 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고유번호증 단체는 수익활동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발급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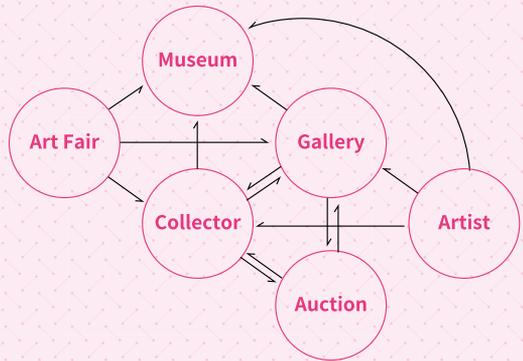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번호증 또한 어떤 특정한 지위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 범위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는 고유번호증 문화예술단체가 제3자로부터 공연비를 지급받고 이를 단원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불안정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유번호증 단체의 활동이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단체의 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수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모에 이르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상적인  
순환 작용으로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

미술계의 생태는 작가가 작품을 생산함으로써 성립된다. 작품의 유통과 순환 구조는 일방적이거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갤러리, 미술관, 기획자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들과 연결되는 옥션, 아트페어, 컬렉터 등 간접적인 관계구조에서 각각의 역할과 방식은 정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포함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트마켓의 논리에 입각한 유통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유형의 시너지도 있으나 작가 또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무형의 시너지나 미학적 평가에 기준을 두자면 모든 구조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상호작용은 미술 생태구조에서 신체의 혈전과 같고, 정상적인 흐름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과 상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동시대 미술의 가치 척도는 아트마켓 중심으로 편중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원리의 방식에서 아트마켓도 순환되고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지나친 마켓 중심의 기형적인 생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년 전 서울의 한 공립미술관에서 아트페어와 같은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림 1] 미술품의 유통구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비평이 약해지고, 작가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작가론이 생략되는 대신 기술적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우선시되고, 시대적 담론의 장이 축소되고, 미술사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미학적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기형적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다. 이론적 비평 대신 수치를 통해 새로운 레코딩에 촉각을 세우고 가격이 가치의 중심인 양 부추기는 아트마켓 현장, 누가 많은 베팅으로 작품을 차지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에 대한 경쟁 방식의 유통에서 옥션이 그 역할을 특독히 하고 있다. 옥션

이라는 성격의 특수성상 당연한 현상이다. 경쟁을 통해 어느 쪽이 획득하느냐에 대한 이분법적인 방식은 초기 인류사회의 단순하고 원시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 논리 위에서 당연시된 현대사회의 문화이다. 문제가 되는 미술품이 경쟁적 방식으로 수치화되는 사이에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가격에 편중되거나 아트마켓 전반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편중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외의 제3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세법 적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근거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목과 과세 논리를 앞세워 2013년부터 ‘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과세 적용이 수면 위로 오르던 2008년 당시 한국의 미술시장은 유례없이 연간 6,000억을 넘나들던 일시적인 호황기였고,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수십억대의 비자금과 관련된 최대 이슈였다. 그러나 다시 2010년부터 현재까지 4,000억대를 초중반을 맴돌고 있다. 이는 세계 미술시장의 0.5%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규모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미술품 ‘물납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고건희 회장이 컬렉션 한 작품 1만 3천여 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13조에 이르는 상속세 일부를 작품으로 대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술계 안팎의 시선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양도차익 과세이건 물납제이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형평성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미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다.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세수확보보다는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 구입, 판매, 상속, 증여 등에 대한 흐름 즉, 과세 정보체계를 만들어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물납제의 경우, 고 건희 컬렉션의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통해 탈세, 세습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반대 여론의 이유이다. 피카소미술관이 대물변제로 만들어지고 사치 컬렉션(Saatchi Collection)이 런던시에 천문학적 가치의 전 컬렉션을 기부하고자 하는 서구의 문화와 비교하면 너무 씹쓸한 현실이다. 더구나 형평성이 예술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판단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식의 세법은 과연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 독이 되어야 하는가.

동시대의 국내외 작품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작가라고 거론되는 작가의 작품 한 점도 구입할 수 없는 예산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한국의 공립미술관은 무엇으로 수장고를 채워 나가야 하는가. 작품 구입 예산은 해외 미술관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은 기부 문화에서 전혀 다른 수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미술관으로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화된 법이 있기에 가능하다. 작품 기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열악한 한국의 현실에서 고 건희 컬렉션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다는 기대가 수포가 되는 오류가 없기를. 제재를 위한 독선적인 세법이 아닌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기부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미술계의 바람, 미래의 자원이다

문화기반 시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작용한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회관 등 8개 분야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에 3,017건이다. 이는 2013년의 2,182건에 비해 약 28% 성장한 수치이며 미술관의 경우 267개(국공립 73, 사립 179, 대학 15)로 2013년 171개에 비해 약 90건 정도가 늘어났다.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활동과 참여는 나날이 고조되고 미술 분야에 관한 관심도 다르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문화 활동 분야는 영화 75.8%, 대중음악 21.1%에 이어 미술 전시 15.3%로 영화나 대중음악의 비중이 미술보다 압도적이다. BTS가 빌보드차트의 반열에 올라가는 등 K팝의 영향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에서 인정받고 이어 ‘미나리’도 주목받는 등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중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미술 분야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추이를 보면 타 장르는 감소세지만 미술 분야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장르로 그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의향 역시 영화와 대중음악 그리고 뮤지컬 참여에 비해 낮은 편이나 추이가 상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이에서 미술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관심에 대해 나이별 조사에서 20~30대의 연령층이 가장 높다는 점은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다. 국내 미술 시장에서 2009년 약 300만 건의 작품 거래가 2019년에는 약 3천8백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저가의 작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젊은 컬렉터가 그 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결과다. 최근 다른 조사에서 거래금액 기준의 고객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60~70대가 많지만, 거래 작품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전후의 젊은 층이 많다는 결과도 고무적이다. 이러한 중저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고객층, 온라인으로 국내외의 작품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미술관 전시를 찾는 관람객 중 비중이 높은 연령층 역시 젊은 층이다. 이들의 관심사가 되는 작품의 대상도 다양해졌다. 장식성이 강한 팝 성향의 작품이나 하이퍼리얼리즘 성향의 작품에서 60년대의 단색화나 실험미술, 미디어작품 등 관심 영역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의 新바람에는 몇 가지 이유가 감지된다. COVID19로 인해 세계의 미술관, 갤러리, 옥션, 작가 등 VR을 이용한 새로운 노출 전략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향유방식에 다양화되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의 미술품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투자회사가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작품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 등 투자할 수 있는 액수를 다양화시켜 놓고 고객이 가능한 액수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작품을 소유하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투자하는 등 단기적인 투자 결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유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 구입한 작품을 장기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 언제든지 교환 또는 판매한다는 단기적이며 소유보다 향유방식의 개념이 강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소유물에 대한 노출과 거래가 개별적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술품 소유에 대한 개념과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SNS를 넘어 메타버스(Metaverse)시대가 도래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차세대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미술문화도 다르지 않다는 것과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되리라는 관측을 해 본다. 오프라인에 의존했던 기성세대는 新바람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은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환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을 위해 구직자는 그동안 경험해 온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기업은 원하는 직군과 구직 희망자와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자면 그간 진행해 온 사업 내용과 미션으로 서로의 욕구를 판단하는 고용이란 자칫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나는 몇 차례의 면접을 진행하며 최종 선정된 사람과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고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계약서에 적힌 ‘노동’과 ‘보수’라는 단어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욕망’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생각하는 바다’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그 어떤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일을 진행했다. 신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이 백신의 원리라고 했던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은 오히려 조직을 성장시키는 모멘텀이 되었고, 우리는 고심 끝에 늘어난 사업 규모에 맞춰 새로운 인원의 고용을 준비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내부의 기준을 다잡는 일이었다. 내부 구성원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급체계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노동환경을 우선 판단해보았고, 서로에게 어떤 성장을 원하고 그 꿈의 방향이 오늘의 조직에서 실현 가능한지 역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다.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채용과정은 면접자를 공정히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의 고용 형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2주 남짓한 모집 공고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면 면접에서 나는 고용희망자에게 노동시간과 임금, 당장 수행할 과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지, 프로젝트의 대상은 누구를 선호하고, 어떤 장르의 그룹과 협업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나는 이런 질문이 딱딱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가득 긴장한 채 말하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추상적인 질문이 오가는 면접 자리에서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와 구체적인 사업영역을 안내한다면, 근무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좀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을 진행하며 마주한 질문은 그렇지 않았다. 면접장을 찾은 분들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정보만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지 물었고, 기업이 앞서 실행해왔던 프로젝트 지향에 대한 공감과 다음 계획을 문의했다.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읽을 수 있던 니즈는 안정적인 지역 내 직장에서 누리는 일 경험의 기쁨과 의미 있는 성장, 그리고 함께 하는 구성원들과의 호흡과 따뜻한 분위기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정보는 숫자로 안내된



임금을 넘어 노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조직의 성장 가능성이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고용의 제 1조건으로 제시되는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던 셈이다.

면접은 부산에서 어떤 일 경험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성장 방향이 무엇인지 작은 피드백 회의처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또렷해지는 경험이었다. 적절한 인원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미세하게 영점을 조정하듯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각자가 정립한 노동의 의미와 철학을 조정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오롯이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한 한 차례의 과정이 끝나고 나자, 나는 나와 주변의 고용을 되돌아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용엔 충분한 의미와 성장이 담기고 있는 것인지 자문했다.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했던 이들, 시민 사회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누구는 현장에 대해 피로함을 호소했고, 누구는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타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을 전달했다. 낯선 영역에 진입한 새로운 사람의 뒤로 나름의 논리와 경험을 갖춘 이들의 이탈을 동시에 마주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영역으로 떠나려는 이들의 공통된 니즈는 소진되지 않고 회복하며 일할 수 있는 체계에 있었다. 고용은 새로운 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안엔 곧 ‘퇴사를 선택했던 사람’도 포함되기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큼이나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도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몰입과 헌신에 대한 측정을 회피해왔던 것은 아닌지, 창작과 예술이라는 측정되지 않는 비전을 이유로 누군가의 노동과 정당한 보상마저 책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이들이 참을성과 진득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떠나려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자문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앞으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 현장에 걸맞은 아카데미를 진행했지만, 떠나가는 이들을 붙잡기 위한 트랙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혹자는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인력만 양성하는 아카데미 교육은 교육생이 자신의 힘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만을 바라는 ‘판타지’와 같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나 역시 지역 고용 현장의 문제는 풍부한 교육 기회의 부족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우선하고 완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는 ‘적절한 일자리’ 부족에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일자리란 체계적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개인의 다음 스텝을 위한 적절한 도전과 쉼의 기회가 함께 제공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욕망과 아쉬움이란 상반된 욕구를 마주하며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용은 언제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나는 고용이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이와의 다음 만남을 희망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건 무엇이 가장 본질적 의미의 해결방법에 가까운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를 손에 들고

많은 이가 지역의 문화생산능력치를 지역의 경쟁력이자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된 이후로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구체화 전략에 골몰해 왔다. 문화현장 혹은 문화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생태계의 비전을 설정하여 지역문화를 진흥할 조건을 찾아내는 작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정세가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를 어느 지역도 피해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관건은 오랜 동안 묵혀 왔던 이 숙제를 먼저 누가 얼마나 적절하게 잘 펼쳐내는가이다.

가만히 서 있는 과녁도 제자리 서서 맞추기 힘든데 이동하는 과녁을 움직이는 궁수가 맞추는 일은 거의 기예에 가깝다. 문화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이들에 따라 만들어지면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터에서 살아가면서 벌여온 자기 활동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문화연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현실을 덜 왜곡되고 적절하게 담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많은 이가 골머리를 앓는다.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 연구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sup>1)</sup>먼저 팔을 걸어 부친 연구팀에서는 먼저 “지역문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역 내 구, 군 단위로 현황”을 파악<sup>2)</sup>하고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보고서의 두께만큼이나 녹록하지 않았을, 연구의 결과물을 들었다. 연구자만큼은 아니지만 이 연구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하나 고민에 빠진다.

### × 부산의 변화하는 문화현황을 지표조사의 그릇에 담다

연구팀은 부산 문화환경 전반의 순환 구조를 분석하려는 의지로 부산문화현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2013년 부산연구원이 진행했던 부산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에 맞게 좀 더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영역을 구분하고자 했다. <sup>3)</sup>2013년 작업에서는 연구영역을 인문사회환경, 문화자원(역사/해양/생활문화), 문화시설, 문화산업, 문화자원(재정/행정), 문화활동으로 구분했다. 2013년 작업의 경우 문화활동영역을 조사할 때 주로 문화·예술인들 기준으로 그들의 활동을 정리했다면, 2020년의 작업에서는 이 영역을 생활문화활동,

1) 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지표연구가 진해된 곳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실태연구(2017), 인천,(2008/2012),부산(2010/2013), 제주(2012/2017)대구(2014), 서울(2015/2017), 광주지역(2016).

2) <2020부산광역시 문화지표>는 부산광역시 전체를 구군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3) 문화자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화현황을 분류하는 작업이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up>4)</sup>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2020년 연구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특정한 이들의 특별한 활동이자 결과물로만 이해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역민과 문화인력, 행정시스템이 함께 호흡하는 지역문화 생산이라는 큰 흐름에 주목했다. 부산시민의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문화활동 패턴 변화”를 파악하며 “예술인 창작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 영역을 인문사회환경,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행정, 해양문화 7개 영역과 20개 중분류, 41개 소분류지표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주요 조사내용 표1 참조).

표 <2020 부산문화지표> 영역, 지표목적, 주요 조사내용 (지표조사보고서 인포그래픽 내용 정리)

고려항목	지표목적	조사내용(#의미고리)
인문사회 환경	생활, 행정, 교육, 경제환경파악	연령별 인구비율 (#황혼의 도시 부산) 다문화구성비율(#함께 자라는 문화다양성 도시) 연령별 1인가구 현황(#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게) 다행복학교(#온마음이 만드는 배움의 현장)
문화기반	문화재 및 문화기반시설의 물리적 규모와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활용 및 성과 규모 파악	부산미래유산(#오늘의 기억이 내일의 유산으로) 공연장 분포현황(#공연을 보려면 원도심으로), 공공도서관 및 도 작은 서관(#도서관이 살아있다) 서점 및 공방수(#슬세권에서 문화를 누려요)
문화인력	전문문화예술인 및 매개인력현황, 교육기관현황파악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예술로 사회를 아름답게) 문화예술분야 대학 재학생 수(#예술가의 꿈 키우기)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현황(#이웃집 예술가)
문화시장	문화예술관련사업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파악과 문화예술작품의 생산 규모 및 유통경로 파악	문화예술산업체 성별 종사자 현황(#모두에게 기회를) 사회적 경제조직(#새로운 예술생태계를 만듭니다) 문화예술작품 유통량비교(#골고루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군별 개최 축제 수(#축제의 도시 부산)
문화활동	시민문화예술교육 및 생활 문화활동 현황조사	평생학습관 생활문화프로그램(#마을에서 생활문화배우기) 통합문화이용권 장르별이용률(#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리다)
문화행정	문화정책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조직, 인력, 법체계와 예산 규모 파악	문화 및 관광 예산액 세부항목 비중(#문화예술 살림살이 엮이기) 전체조례대비, 문화예술관련조례비율(#문화예술가꾸는 법)
해양문화	부산의 해양문화 도시적 특화 전략 파악	지역별 바다해설사 현황(#바다의 알쓸신잡을 알려드립니다) 구군별 자매도시현황(#세계와 연결된 부산)

4)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인터넷 위키백과 사전 중에서).

영역마다 지표설정방향, 지표현황을 정리하고 소분류마다 지표정의, 자료출처,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대부분 기존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다보니 연구에 한계가 많았을 것이다. 기록자료가 없는 영역도 많았기에 연구팀이 직접 데이터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기간, 연구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영역,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항목에는 조사의 한계를 덧붙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문화시장의 영역에서는 연구팀이 발품을 많이 들었다. 아트페어나 갤러리 수, 부산지역출판현황, 문화작품 유통량을 자체 조사하였지만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향후 전수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조사의 한계를 기입한 곳은 문화기반 영역의 공방, 문화인력 영역의 장애문화예술인 수, 문화시장 영역 문화예술작품 유통 건수, 문화활동 영역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수 항목이다. 예를 들어 생활문화동아리의 경우, 정량집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정성조사가 필요하고 장애문화예술인의 경우, 전국 및 지역차원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및 실태 파악이 미진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고 향후 장애 예술인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 및 창작 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첨부하였다.

#### ×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갈무리 과정의 중요성

또한 총체적으로 연구팀에서는 “문화지표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 자료 취득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중앙 단위의 다양한 조사 체계가 있으나, 구군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구군 단위 문화현황에 대한 한계가 많았”고, “또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회적 가치 등을 드러내는 지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자료 부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문화지표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 시계열적으로 자료누적과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영역에서 밝힌다.

제언에서 밝힌 부분은 연구팀의 한계가 아니라 부산지역문화연구나 문화생산시스템의 현실적 한계다. 2020 부산문화지표 보고서에는 부산문화현황이나 실태를 담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문화생산 조건과 문제점까지 딱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이는 정리되지 않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연구의 미덕이다). 지역이 해결해야 할 숙제를 먼저 잘 펼쳤다. 관건을 터트린 것이다. 이 관건을 누가 이어 받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sup>5)</sup>

5) <2020 부산문화지표 보고서>를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보시기를 권장한다. 부산 지역의 문화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마치 막막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장불의 희미한 그림자에 비추인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 들 것이다. 어둠에 익숙한 눈이기에 처음에는 시릴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번 들여다보시길. 눈에 익숙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를 꼭 만나서 눈도 트고 입도 터 보자.

3~4월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예술인컨설팅 매칭사업<아이컨택> 진행 중 (03.18)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술인 컨설팅 매칭사업[아이컨택]'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시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 총서 1, 2권 발간 (03.23)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의 담론과 가치, 현장 사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총서 1, 2권을 발간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제1차 열린 포럼 개최(03.29)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제1차 열린 포럼 "문화 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공간"을 4월 2일(금) 오후 2시 한성1918 청자홀에서 개최하였다.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 논의 (03.12)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2일(금)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지속 참여 의향 81% (03.3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로 보는 코로나19, 문화여가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다 (03.04)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가 바꾼 국민의 문화여가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코로나19 전후 문화여가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60~90년대, 공연예술 심의 대본 원문 최초 공개 (03.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카이브예술기록원은 오는 3월 11일부터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문교부(1961~1966),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1976), 한국공연윤리위원회(1976~1986), 공연윤리위원회(1986~1997) 등에서 심의한 1960~90년대 공연예술 심의대본과 심의서류 5,900여 편을 공개한다.

예술위원회, 21년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 발표 (03.26)

지난 3.10(수) 문체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1년 주요 사업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개방 운영 (03.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경남콘텐츠코리아랩 내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고 3월 22일부터 도내 창작자 및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시동(04.05)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지난 3월 31일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부산, 울산문화재단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분야 광역대응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지역문화자산 아카이빙... 콘텐츠화 모색 (03.23.)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그동안 축적된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융·복합 콘텐츠 제작 위한 업무협약 (03.30.)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9일 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문화·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교육적 효과 제고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시대학원, 전남대학교 문화전문 대학원,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등 지역 주요 콘텐츠 분야 대학원, 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투표 <8살 시민청 12대 사업> 결과 공개... 최고의 사업은 '시민기획단'(03.08.)

서울문화재단 시민청의 대표 사업 중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시민기획단'이 차지했다.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특화 예술교육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개관 (03.26.)

서울문화재단이 10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매체) 활용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장애예술가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3.18.)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3월 18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예술공간 이아 장애예술가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충북문화재단

청주 '대성비디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04.01.)

충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콘텐츠누림터 유지강화 사업으로 청주시 대성로 122번길에 '대성비디오' (사진), '가람신작'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한다.

## #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 계획 전환 (03.15.)

부산시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BDI 정책포커스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 # 부산관광공사

설레는 봄을 그려보(BOF)! 드로잉 이벤트로 시동 건 2021 BOF

더욱 안전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아시아 최대 한류 축제 2021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 이하 2021 BOF)이, 드로잉 이벤트와 함께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 #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영화의전당, 부산 문화발전 맞손 (03.28.)

(재)금정문화재단은 지난 26일 금정구청에서 (재)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1. 04. 22.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5-7205~7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총괄) 김예인(담당)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 772713 411008  
ISSN 2713-4113